

부속서 IV

제2.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제 1 조

1. 제2조에 규정된 상품에 포함된 농산물 원료의 비용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다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입시 조세 징수. 그리고
- 나. 수출시 채택된 조치의 적용

2. 수입시 징수된 조세와 수출시 채택된 조치는 해당 상품에 포함된 농산물 원료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차이에 근거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조

제1조에 규정된 규정을 고려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는 검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에 대하여 2005년 4월 1일 현재 유럽공동체에 제공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조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표 2에 규정된 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 관세율이 “B2”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6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3. 특혜 관세율이 “B4”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11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제 4 조

당사국들은 초기에, 적어도 발효 전에, 제1조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부속서가 다루고 있는 상품에 대한 무역 상황을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비추어 그리고 당사국과 다른 자유무역 상대국 간의 약정 및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약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품목 적용범위의 가능한 변경에 대하여, 그리고 제1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의 가능한 개선에 대하여 결정한다.

부속서 IV의 표 1

HS 세번	상품 설명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 10	- 요구르트 --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ex 90	- 기 타 --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3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9	동물성의 해면
0510	용연향·해리향·시뵈와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40	- 스위트 콘(사카라타 품종)

HS 세번	상품 설명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90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스위트 콘 (사카라타 품종)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 식물성 수액과 엑스 -- 감초의 것
13	-- 호프의 것
14	--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ex 19	-- 기타 --- 음료수 또는 음식재료의 제조를 위한 식물성 추출물의 혼합물 --- 음료수 또는 음식재료 또는 바닐라 올레오레진의 제조를 위한 식물성 추출물의 혼합물 외의 약용
20	-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1	-- 한천
32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9	-- 기 타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2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충상으로 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03	비 또는 부러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516	<p>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p> <p>ex 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오팔 왁스”로 불리는 가수 피마자유</p>
1517	<p>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p> <p>ex 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유지의 무게가 10% 초과 15%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p> <p>ex 90 - 기타 -- 유지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 초과 15% 이하인 것 --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p>
1518	<p>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p> <p>ex 00 리눅신</p>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테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702	<p>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p> <p>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p> <p>ex 9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p>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1	-- 조란을 넣은 것
19	-- 기타
ex 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소시지, 고기, 고기내장 또는 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 이상 포함된 그 밖의 제품
30	- 기타의 파스타
40	- 쿠우스쿠우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날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날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ex 90	- 기타 -- 스위트 콘(사카라타 품종), 팜 하트, 참마, 고구마 및 유사한 식물의 식용 부분(전분의 함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90	- 기타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ex 10	- 감자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ex 9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스위트 콘(자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ex 20	- 감자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80	스위트 콘 (자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ex 2006	- 스위트콘(자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11	- 견과류, 낙화생, 기타 씨앗(함께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낙화생 --- 피넛 버터 --- 낙화생 (구운 것)

HS 세번	상품 설명
91 ex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 팜 하트 -- 기타 --- 스위트콘(사카라타 품종) 외의 옥수수(콘)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0 ex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기타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3	맥 주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20	-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